

1. 의결주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부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의 범위, 환경정보 공개대상 규모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제1항)
- 나.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세부 기준을 신설함(안 20조의2)
-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정기·종합) 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3)
- 라.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범위 규정(안 제20조의4)
- 마.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 대상, 업무범위, 지정요건 규정(안 제20

조의5, 안 제20조의6, 안 제20조의7)

바. 환경컨설팅회사 업무 범위 규정을 신설(안 제22조의9)

사. 환경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규모를 정함(안 제22조의1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리스크, 취약성을 평가·분석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생물자원의 관리·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신기 술””을 ““신기술””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활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따른 중앙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3 및 제20조의8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3(중전의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를 “각 호의 구분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나.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라.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나.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다.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라.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마.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의3(중전의 제20조의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를 “각 호의 구분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나. 녹색환경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다. 그 밖에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나.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다. 그 밖에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활성화 등) 법 제10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금융상품의 대상 경제활동에 대한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업
2. 법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기관·법
인 또는 단체의 평가·지원에 관한 사업
3. 환경책임투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4.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의체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5.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

제2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제20조의6(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상품의 대상 경제활동에 대한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검증
4. 제20조의4제3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

② 법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한다.

제20조의7(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제20조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을 검토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그 해의 사업 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검증 결과 업무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법 제16조의7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6까지를 각각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7까지로 하고,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9(환경건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의10(중전의 제22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이란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제2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7조제3항”으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을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으로, “제품을 유통시킨”을 “제품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생 략)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 제 ② (생 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u>신기술</u>”이라 한다)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 4. (생 략)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 1. ----- “<u>신기술</u>”-----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
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4. (생략)

③ (생략)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신설>

②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활
동-----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 운영) ① -----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
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
우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을 갱
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

----- 각 호의 구분과 ----
-----.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나.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라.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
성화 정도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
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
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나.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다.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
적

라.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
영의 활성화 정도

마.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
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각 호의 구분과 -----
-----.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생략)

<신설>

적

나. 녹색환경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다. 그 밖에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적

나.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다. 그 밖에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활성화 등) 법 제10조의4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금융상품의 대상 경제활동에 대한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업
2. 법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평가·지원에 관한 사업
3. 환경책임투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4.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5.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

<신 설>

<신 설>

업

제2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4제1항에 따른 환경건설팅회사

제20조의6(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상품의 대상 경제활동에 대한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검증
4. 제20조의4제3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신 설>

업무

5. 그 밖에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

② 법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이 수행한다.

제20조의7(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
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
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제20조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
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을 검토하고, 전담기관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검증 결과 업무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법 제16조의7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생략)

<신설>

제22조의9(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 (현행 제20조의3과 같음)

제22조의9(환경건설탕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의10(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
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
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5. 시·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
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
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
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
한다)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
권 할당 대상업체

<신 설>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
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
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
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
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u>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 공단은 제외한다)</u> 6.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지 방의료원(직원의 <u>정원이 300 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 한다)</u> 7. 「<u>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u>」 <u>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u>
<u>제22조의10 ~ 제22조의16</u> (생 략)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 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u>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 시킨 경우</u> ②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u>제22조의11 ~ 제22조의17</u> (현행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6까 지와 같음)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 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7조제3항-- 경우</u>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
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
품을 유통시킨 경우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삭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
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 4. (생략)

③ ④ 삭제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
탁한다.

1. ~ 5. (생략)

<신설>

6. ~ 12.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 제
품인 -----

제33조(위임 및 위탁)

②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제2항제1호-----

3. 4.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
거

7.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2

⑥ ~ ⑨ (생략)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호까지와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 2. (현행과 같음) <u>2의2.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u> 3. ~ 6.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연 락 처	(044) 201 - 6706